

수원지방법원 2022. 10. 25 선고 2022가단50807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고

담당변호사 윤우진

변 론 종 결 2022. 9. 27.

판 결 선 고 2022. 10. 25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21. 11. 4. 체결된
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는 주식회사 C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
춘천지방법원 2021. 11. 4. 접수 제50300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
이행하라.

이 유

1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2021. 8. 25.부터 2021. 8. 30.까지 주식회사 C에 합계 2억 원을 대여하였다. 주식회사 C은 2021. 5. 19.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을 매수하고 2021. 11. 4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 주식회사 C은 2021. 11. 4. 무자력인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춘천지방법원 2021. 11. 4. 접수 제5030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. 따라서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1. 11. 4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이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,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주식회사 C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2. 판단

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(원고는 변론기일에 모두 불출석하였다),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정엽

목 록

1. 춘천시 E 전 3,428㎡
2. 춘천시 F 대 176㎡
3. 춘천시 G 묘 80㎡. 끝.

